

‘출판및인쇄진흥법’ 2월 27일부터 전면시행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에 의해 공식 발효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은 알려진 것처럼 발행 1년 이내 도서의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 도서의 할인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서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행물을 판매하는’ 서점들은 이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 서점에 대해서는 유통에 소용되지 않는 비용을 독자 및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10퍼센트 범위 이내의 할인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출판및인쇄진흥법은 또 적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도서정가제는 시행 일로부터 5년 간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폭을 줄여나간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부터 성인용 수험서 등 실용서적을, 2007년부터는 초등학교 참고서를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또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해 ‘발행 1년 이내의 책’으로 적용 대상을 못박고 있다. 시행령을 보면 ‘발행일이라 함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서점출판업계는 진작부터 이 조항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은 곧 초판 발행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초판 발행 1년 이내의 도서는 일반적으로 서점 전체 보유 도서의 2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적용 기준은 사실상 도서정가제 판매를 유명무실화하려는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대로 시행령이 통과되려는 움직임이 일자 출판업계는 이 규정이 도서정가제 입법취지를 뒤흔드는 편법이라고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범출판계의 시위, 도서정가제를 차라리 포기하라!

범출판계의 시위는 지난 2월 8일과 2월 11일, 각각 광화문과 대학로에서 있었다. 시위에는 사안에 대한 출판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등 15개 범출판단체 회원 500여 명이 참여,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와 부당한 입법강행을 성토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소속 서점들은 출판계의 항의에 동참하는 의미로 2월 11일 하루 동안 서점 문을 닫고 철시하기도 했다.

출판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발행일 1년 이내’로 정한 것은 사실상 도서정가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적용 기준을 책이 새로 인쇄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결과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행령은 기존 도서의 할인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이전 발행된 모든 도서의 발행일을 시행일(2월 27일)에 발간된 것으로 해달라는 출판업계의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판업계의 도서정가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진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 날인 2월 19일, <문화관광부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제정 발표에 대한 학계, 저술계, 출판계, 서점계, 유통업계 입장>이라는 광고를 일간지에 내고 ‘출판및인쇄진흥법 및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업계 대표들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

출판업계의 최대 혼란 중 하나였던 도서정가제 규정을 담은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월 27일부터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 법안을 두고 출판업계와 서점업계, 온라인 서점업계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점을 감안, <출판저널>은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일부 문제점을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짚어본다.

이 문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을 동법 제22조에 연계 하여 1년이 경과한 간행물에 대한 조항을 최소한의 법적인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졸속으로 법안을 마련한 것은 사실상 전 도서를 할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도서정가제를 포기하려는 악법'이라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출판업계가 요구해온 사안 중 온라인 서점의 마일리지 서비스 및 사은품 혜택 규제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시안(가칭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해 가급적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고시안 제정 문제 역시 쉽게 타결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각 온라인 서점업계 쪽에서 반대 의견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모닝365, 알라딘, 인터파크 등 인터넷서점 3사는 2월 21일 '(가칭)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인터넷서점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문화부 고시는 소비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반소비자적인 조치' 라며 고시 입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양측의 현격한 이견 차이로 고시안 제정을 둘러싸고 앞으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남은 문제는? 해결 방법은?

기자의 눈에도 금번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적용되기 시작한 도서정가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테면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발행일 적용은 필연적으로 유통질서의 혼선과 부당한 요령, 편법 등을 야기시켜 출판시장을 혼탁하게 할 개연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아도 '발행일'에 대한 개념을 혼동해 초판 발행과 재판 발행의 차이에 따른 도서정가 적용의 문제가 유통시장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가격 혼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부터가 의문이다. 가격혼란은 소매시장에서 더 심각하다. 이를테면 장기간에 걸쳐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스테디셀러 같은 경우, 초판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이 함께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소비자들에게 판매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의문이다.

서점 종사자와 독자들도 혼란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교보문고 인문 팀에서 근무하는 강혜영 씨는 '도서정가제는 서점 직원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소비자들에 대해서 이 법안의 취지가 보다 널리 홍보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책 판매가를 안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보문고 매장에서 만난 회사원 이선규 씨(32)는 '도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독자가 판권의 발행 날짜를 일일이 알아보고 확인해야 하느냐'며, '그러면 도서정가제를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조건 부로 적용되는 도서정가제 정착이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어디서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관계 당국이 솔로문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다. ■

김도언 기자